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2명(6급 2명)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2명(7급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3명(6급 3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8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상호 이체하고, 지방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6명(9급 36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한편,

데이터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국세통계담당관의 명칭을 국세데이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6. 7.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세통계담당관”을 각각 “국세데이터담당관”으로, “두
되”를 “두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통계담당
관”을 “국세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거래 관련 조사의 관리

제22조제2항제2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제3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공업주사 5명, 전산주사 2명”을 “공업주사 5명”으
로, “전산주사보 1명”을 “전산주사보 3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2명”을 “세무주사 3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04명(6급 44명)”을 “107명(6급 47명”
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행정사무관 “127”을 “128”로, 세무주사 “242”를 “241”로, 전

산주사 “45”를 “43”으로, 전산주사보 “65”를 “67”로 한다.

별표 7 중 세무서기 “9”를 “1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7의2 중 행정사무관 “4”를 “3”으로, 세무주사 “23”을 “24”로, 세무서기 “9”를 “1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0 중 세무서기 “5,415”를 “5,414”로, 세무서기보 “3,706”을 “3,732”로,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5”를 “44”로, 운전서기보 “160”을 “161”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1”을 “29”로, 사무운영서기보 “412”를 “379”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595”를 각각 “20,598”로 하고, 행정사무관 “1,085”를 “1,084”로, 세무주사 “4,370”을 “4,374”로, 세무서기 “5,437”을 “5,436”으로, 세무서기보 “3,706”을 “3,732”로,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5”를 “44”로, 운전서기보 “160”을 “161”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1”을 “29”로, 사무운영서기보 “412”를 “379”로 한다.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9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행정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전산주사 2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전산주사보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2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전산주사보 2명, 별표 7의2의 세무주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9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환원되는

별표 10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4명, 별표 10의2의 정원 99명(행정사무관 29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4명,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29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2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 음)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 당관 · 기획재정담당관 · <u>국세통 계담당관</u>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u>두되</u> , 혁신정책담당관 · 기획재정담당관 및 <u>국세통계담 당관</u> 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 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 다.	②----- ----- <u>국세데 이터담당관</u> ----- --- <u>두며</u> ----- ----- <u>국세데이터 담당관</u>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u>국세통계담당관</u> 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 다.	⑥ <u>국세데이터담당관</u>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조사국) ① ~ ⑤ (생 략)	제9조(조사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u>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조사 계획의 수립</u>	1. <u>국제거래 관련 조사의 관리</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운영지원과) ① (생략)	제22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의 <u>수발</u> ·편찬·보관 및 세무통계	2. ---- <u>접수·발송</u>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0조(세무서) ① ~ ③ (생략)	제30조(세무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채납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채납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 여 분장한다.	④-----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문서의 분류· <u>수발</u> ·통제· 편찬·보존 및 관리	3. ----- <u>접수·발송</u> --- -----
4. ~ 26. (생략)	4. ~ 26.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 ⑫ (생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26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전산주사 2명, 세무주사보 3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신설>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 공업주사 5명 -----

----- 전산주사보 3명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4명(6급 44명, 7급 3명, 8급 57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 ⑧ (생략)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 세무
주사 3명-----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07
명(6급 47명-----

-----.

⑤ ~ ⑧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7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2021. 12. 31.] 제2조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전산주사 2명, 전산주사보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2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9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9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
제>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별표 10
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
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 별표 10의
2의 정원 100명(행정사무관 30
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
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4명,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0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
명으로 본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127</u>		<u>128</u>	+1
	.		.		.	
	.		.		.	
세무주사			<u>242</u>		<u>241</u>	-1
	.		.		.	
	.		.		.	
전산주사			<u>45</u>		<u>43</u>	-2
	.		.		.	
	.		.		.	
전산주사보			<u>65</u>		<u>67</u>	+2
	.		.		.	
	.		.		.	

[별표 7]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세무서기			<u>9</u>		<u>10</u>	+1	
	•		•		•		
	•		•		•		
<u>사무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별표 7의2]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4</u>		<u>3</u>	-1	
	.		.		.		
세무주사			<u>23</u>		<u>24</u>	+1	
	.		.		.		
	.		.		.		
세무서기			<u>9</u>		<u>10</u>	+1	
	.		.		.		
	.		.		.		
<u>사무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세무서기	<u>5,415</u>	<u>5,414</u>	-1
•	•	•	
•	•	•	
세무서기보	<u>3,706</u>	<u>3,732</u>	+26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35</u>	<u>44</u>	+9
•	•	•	
•	•	•	
운전서기보	<u>160</u>	<u>161</u>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31</u>	<u>29</u>	-2
•	•	•	
사무운영서기보	<u>412</u>	<u>379</u>	-33
•	•	•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595</u>	<u>20,598</u>	+3
일반직 계	<u>20,595</u>	<u>20,598</u>	+3
·	·	·	
·	·	·	
행정사무관	<u>1,085</u>	<u>1,084</u>	-1
·	·	·	
·	·	·	
세무주사	<u>4,370</u>	<u>4,374</u>	+4
·	·	·	
·	·	·	
세무서기	<u>5,437</u>	<u>5,436</u>	-1
·	·	·	
·	·	·	
세무서기보	<u>3,706</u>	<u>3,732</u>	+26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35</u>	<u>44</u>	+9
·	·	·	
·	·	·	
운전서기보	<u>160</u>	<u>161</u>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31</u>	<u>29</u>	-2
·	·	·	
사무운영서기보	<u>412</u>	<u>379</u>	-33
·	·	·	